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2019. 12.



|| 목 차 ||

1. 2020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2. 주요 변경사항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4. 세부평가기준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6. 2021년 평가 변경사항
7.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2020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1) 상호협력평가 제도 개요

가. 목 적

-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나.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5호(2019. 7. 15.)

다. 평가기관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일부 평가항목 공동 확인)

라. 평가대상

- 전년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전년도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1. 2020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 신청사의 규모별 협력업자의 인정범위 >

신청사	협력업자 인정	협력업자 불인정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건설사업자 · 건설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건설사업자 · 건설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 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시공업 등

- ☞ 대기업인 건설사업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
 -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19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6,000억원 이상인 업체)

1. 2020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2) 평가결과 우대사항

- 공공공사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시공능력 평가액	감 경 건산법상 벌점
	조달청		지자체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95점이상	3.0	0.60	2.0	3.0	0.5	6%	-0.5
90점이상 95점 미만	2.0	0.58					-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56	1.5	2.2	0.4	5%	-
70점이상 80점 미만	1.0	0.54	1.0	1.4	0.3	4%	-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52	0.5	0.5	0.2	3%	-

1. 2020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3) 2020년 평가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상호협력평가 신청 프로그램 오픈	1월말	- 상호협력평가 신청 페이지(sangho.cak.or.kr) 에서 전산자료 입력 및 출력 - 공통 사실확인서류 준비
신청서류 및 공통 사실확인서류 접수	3.2(월)~3.16(월)	- (회 원) 소속 시도회 - (비회원) 본 회
업체별 사실확인서류 요청 및 접수	4월말~5월초	- 실적신고 홈페이지(siljuk.cak.or.kr) 확인
업체별 평가결과 확인, 이의신청 접수	6월 중순	
최종 평가결과 발표	6월말	- 국토교통부
평가결과 확인서 발급 개시	발표 이후 (7.1. 예정)	- 평가결과 우대사항등 적용

1. 2020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4) 제출서류 목록

전산출력물
① 신청서 표지
②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③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④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⑤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⑥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⑦ 협력업자 지원현황
⑧ 상생협약체 운영현황
⑨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실적 현황
⑩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⑪ 제재처분 받은 현황
⑫ 사망사고 발생 현황
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실적 현황
⑭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⑮ 협력업체별(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사실확인서류	
공 통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②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수급협정서 갑지 (사본)
	④ 상생협약체 협정서 등 상생협약체 운영 관련
	⑤ 상호협력 관련 표창장 (사본)
	⑥ 기술지원 관련
업 체 별 제 출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 낙찰률 관련
	② 현금성 결제비율 관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관련
	④ 전자하도급계약 관련
	⑤ 재무지원 관련
	⑥ 교육지원 관련
	⑦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지급 관련
	⑧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현황

2. 2020년 상호협력평가 주요 변경사항

(1) 하도급 기성실적 확인 자료 국세청 연계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시스템 구축

(2) 하도급 낙찰률 평가 신설

- 하도급 낙찰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평가 항목 신설

(3) 협력업자 재무지원 인정기준 강화

- 협력업자 재무지원으로 인정되는 전자하도급계약 인지세액 부담 비율 기준 강화(50%→70%)

(4) 신인도 감점 범위반행위 추가

-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이 추가 신설

2. 2020년 상호협력평가 주요 변경사항

(5) 사망사고 현장 평가 신설

-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하는 항목 신설

(6)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인정기준 강화

- 임금 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해 실적 인정

(7) 협력업자 안전지원 평가 신설

-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육성	57점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42점	신 설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32점	32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5점)	(5점)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④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⑤ 전자하도급계약	(4점)	(4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5점	
다. 상생협업체 운영	5점	5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4. 신인도	13점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3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없으면 기본점수)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10점)	(-10점)	신 설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10점)	신 설
5. 가점	+11점	+11점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3점)	(+3점)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배점→가점
다.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5점)	(+5점)	신 설
총 계	100점	100점	

4. 세부평가기준

(1) 공동도급 실적 평가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frac{\text{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text{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60%이상	5
		50%~60%미만	4
		40%~50%미만	3
		30%~40%미만	2
		30%미만	0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rac{\text{④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text{③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30%이상	5
		25%~30%미만	4
		20%~25%미만	3
		10%~20%미만	2
		10%미만	0

▶ ‘가’, ‘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 단, 당년도 자사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 ‘1점’ 부여

4. 세부평가기준

(1) 공동도급 실적 평가

① 공동도급 실적 건수

-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자사의 공동도급 현장수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평가받은 결과에 따라 판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 기준)

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건수

- ①의 현장 중 협력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기성실적이 발생한 건수
- ‘전년도에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 전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및 당년도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공동도급 실적 건수를 인정

③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

- ②의 현장에서 발생한 자사의 당년도 기성액을 합산

④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 ②의 현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을 합산

사실확인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4. 세부평가기준

(2)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평가

산정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실적 ① 총기성실적	45%이상	20	40%이상	25
	35%~45%미만	15	30%~40%미만	20
	25%~35%미만	10	20%~30%미만	15
	15%~25%미만	5	10%~20%미만	10
	15%미만	0	10%미만	0

① 총기성실적

- 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통해 인정된 ‘국내 기성액 합계’로 산정
 - 단,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실적은 총기성실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실적’에 종합건설사업자인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총기성실적에도 동 금액을 합산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실적

-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 해당 건설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을 합산
 - 하도급 실적에 대한 당년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전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 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하도급 실적을 인정

4. 세부평가기준

(2)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평가

- 당년도에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건설공사에 한해 하도급 기성실적 인정
 - ‘① 총기성실적’에 원도급 기성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정 불가
 - 단, 차년도에 해당 공사의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당년도에 불인정되었던 하도급 실적을 차년도 하도급 실적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 차년도에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당년도 중 원도급공사 준공 등)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공사의 차년도 1분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까지 당년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신청사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기성실적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
-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실적도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하도급 실적도 인정

사실확인서류

- ㉠ 세무서에 제출한 “2019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은 원본 제출
 - 반드시 연간기준(2019.1.1.~12.31.)으로 작성 제출 (분기별 자료 제출 금지)
 - 자체기장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확인자 날인 없이 우선 제출하고, 추후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의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20.4.24.까지 제출
- ※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필요
- ㉡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다음 서류 제출(대표사, 구성사 모두 제출)
 -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또는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해당부분에 밑줄 표시)

4. 세부평가기준

(3)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	$\frac{\text{②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text{① 신규 하도급 건수}}$	70%이상	10
		50%~70%미만	8
		30%~50%미만	6
		10%~30%미만	4
		10%미만	0
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합계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 합산	120건이상	10
		80건~120건미만	8
		50건~80건미만	6
		30건~50건미만	4
		3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신규 하도급 건수

- 당년도 협력업자와의 신규 하도급계약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 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 건수 중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하도급건수
 - 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의 확인 없이 해당 건을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로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사실확인서류

< 공공공사 >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계약 관련 보증서,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con 건설공사대장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

< 민간공사 >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계약 관련 보증서,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con 건설공사대장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 ㉡을 1set로 제출

4. 세부평가기준

(4) 하도급 낙찰률

산정방법	③ 평가기준	점수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90%이상	5
	86%이상~90%미만	4
① 도급계약액 중 협력업자의 하도급부분금액 총액	82%이상~86%미만	3
	82%미만	0

4. 세부평가기준

(4) 하도급 낙찰률

① 도급계약액 중 협력업자 하도급부분금액 총액

- 당년도에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액 중 해당 하도급부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의 계약액을 합산하여 산정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0’인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건도 포함)

③ 평가기준

- 산정방법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하도급 낙찰률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단,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된 공사가 전체 신규 하도급 계약 공사건수의 70% 이상이거나 120건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점 부여

사실확인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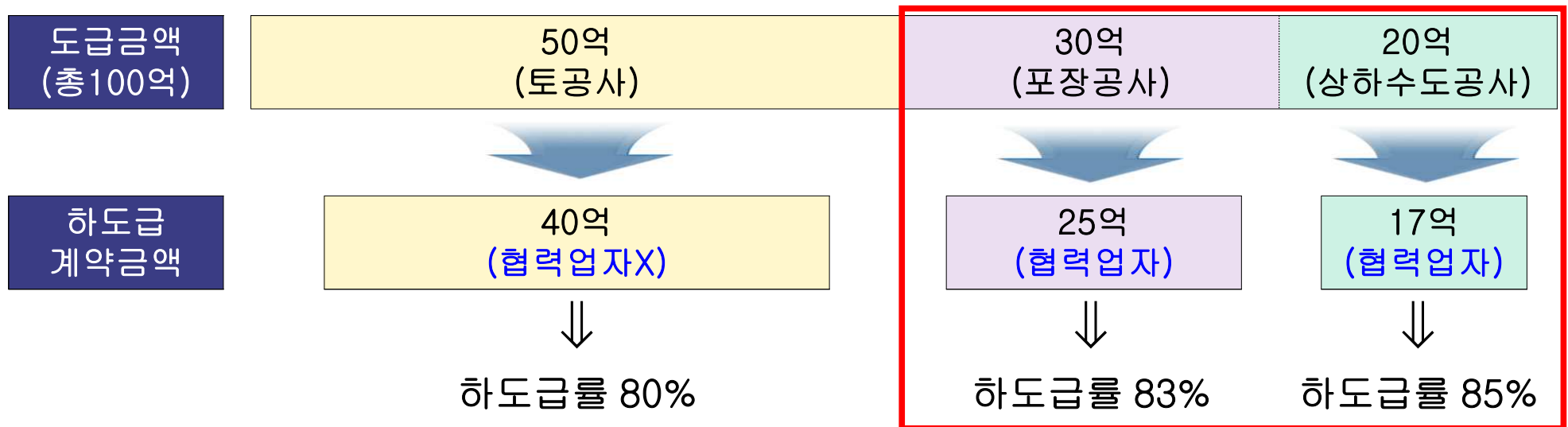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계약 관련 보증서, 발주자 확인을 받은 Kiskon 건설공사대장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해당

4. 세부평가기준

(4) 하도급 낙찰률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30호('19.6.27.) >

-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 ▷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하도급낙찰률

$$= (25+17) / (30+20) = 84\%$$

4. 세부평가기준

(5)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②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hr/> ① 신규 하도급건수	30%이상	8
		20%~30%미만	6
		10%~20%미만	4
		5%~10%미만	3
		5%미만	0
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합계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합산	50건이상	8
		40건~50건미만	6
		30건~40건미만	4
		20건~30건미만	3
		2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4. 세부평가기준

(5)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① 신규 하도급건수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 실적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전부를 법정기일 전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으로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초과한 하도급계약의 건수
 - 단, 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에 포함
 -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 협력업자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 건도 평가에 포함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하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사실확인서류

-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의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의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 ㉠,㉡,㉢,㉣을 1set로 제출
-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사본으로 ㉠~㉣ 대체 가능

4. 세부평가기준

(6)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비율	②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hr/> ① 신규 하도급건수	30%이상	5
		20%이상~30%미만	4
		10%이상~20%미만	3
		5%이상~10%미만	2
		5%미만	0
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합계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합산	50건이상	5
		40건이상~50건미만	4
		30건이상~40건미만	3
		20건이상~30건미만	2
		2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신규 하도급건수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 실적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전(원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도급 기성·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9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수
 -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 협력업자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 건도 평가에 포함
-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도 포함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 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사실확인서류

-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 내역 확인서류 (수령일자 및 수령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확인서류 (지급일자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 ㉠,㉡,㉢,㉣을 1set로 제출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으로 ㉠~㉣ 대체 가능

4. 세부평가기준

(7) 전자하도급계약 실적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전자하도급계약 건수 <hr/> ① 신규 하도급건수	50%이상	4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2
	20%이상~30%미만	1
	20%미만	0

4. 세부평가기준

(7) 전자하도급계약 실적

① 신규 하도급건수

-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② 전자하도급계약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수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사실확인서류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 하도급계약서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 서류)
- ⇒ ㉠, ㉡을 1set로 제출

4. 세부평가기준

(8) 협력업자 재무지원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②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hr/>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계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산	100개사이상	5
		70개사이상~100개사미만	4
		40개사이상~70개사미만	3
		20개사이상~40개사미만	2
		20개사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 2019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의 총 “업체수”를 적용
 - 하나의 업체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 <예시>** 토공사업자 ‘A건설(주)’과 포장공사업자 ‘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경우 총협력업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②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 아래 인정 유형에 따라 1개 협력업자 업체별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 이상’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재정지원 업체수에 포함
- <예시>** 공사업종과 포장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A건설(주)’과 각 업종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공사에 대해서만 원도급대금 수령 없이 하도급대금 1백만원을 우선 지급한 경우 ‘A건설(주)’는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에 포함

4. 세부평가기준

(8) 협력업자 재무지원

☞ 재무지원 인정 유형

- ㉠ 협력업자에게 업체당 하도급대금외 1백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기자재 등)을 지원한 경우
-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전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한 경우
- ㉢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지세액 중 70%이상을 자사가 부담한 경우로서 협력업체별 인지세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

하도급계약액	인지세액	신청사 부담분	지원 인정금액
1천만원 이상	2만원	1.4만원	6만원
3천만원 이상	4만원	2.8만원	12만원
5천만원 이상	7만원	4.9만원	20만원
1억원 이상	15만원	10.5만원	50만원
2억원 이상	15만원	10.5만원	100만원

-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별 수수료 등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인정)

하도급계약액	지원 인정금액
4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사실확인서류

재무지원 유형	제출서류
업체당 하도급대금 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 지급	㉠ 원·하도급 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사유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내용·날짜·금액이 명시되고 원·하도급사 날인한 원본 제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	㉠ 원·하도급 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KISCON 건설공사대장 (원도급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원·하도급계약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인지세 70% 부담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 하도급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서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하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	㉠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 하도급사의 하도급이행보증서 발행 내역 ㉢ 보증서 면제 사유서

4. 세부평가기준

(9) 협력업자 교육지원

구 분	④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임직원수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합산	협력업체 1,0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미만	/	
		200인 이상	160인 이상	120인 이상		5
		160~199인	120~159인	70~119인		4
		120~159인	80~119인	40~69인		3
		80~119인	40~79인	20~39인		2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 2019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의 총 “업체수”를 적용
 - 하나의 업체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 아래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전문공사 업종별로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였더라도 업체수는 1개로 인정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지원시 인정 가능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아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을 지원한 임직원수 합산

④ 산정방법 관련 우대사항

- 상반기(1~8월) 교육 참여시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및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가중치 1.2배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 하여 합산
- 아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법정윤리교육(㉠)에 신청업체 소속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 인원수의 3배를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또는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합산

.....
【예시】 총협력업체 법인수 100개사이며, 상반기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10명인 경우

▷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 \frac{24\text{개사}(20 \times 1.2\text{배}) + 36\text{개사}(10 \times 1.2\text{배} \times 3\text{배})}{100\text{개사}} = 60\% \Rightarrow 5\text{점}$$

.....

4. 세부평가기준

(9) 협력업자 교육지원

☞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

구분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위탁교육)	㉡ 건설업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법정윤리교육)
교육 대상	협력업체 임원 또는 직원	신청업체 자사 임직원 또는 협력사의 임원
교육 기관 및 과정	<p>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교육훈련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교육, 정기 안전교육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불인정 - 「건설법」, 「하도급법」 과목을 각각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명이 명기되어야 함 - 온라인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 과정 이수한 경우만 인정 	<p>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윤리교육 - 신규 건설사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또는 영업정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

☞ 협력업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방법

- ▷ 자사가 교육기관에 실제 납부한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형태 모두 인정
- ▷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에 있어 공동수급체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가 해당 협력업체를 교육 지원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나, 구성사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교육비 지원이 확인되어야 함
 - ※ 단, 구성사별로 교육 지원한 하도급사를 협력업자로 등록하여야 인정 가능

사실확인서류

- ㉠ 교육참가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재직여부 확인)
- ㉡ 교육기관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적정 교육기관 여부 확인)
 - 온라인 교육인 경우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
-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교육비 납부내역, 참석자, 교육내용, 수료여부 등 확인 가능 서류)
- ㉣ 자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교육비 이체 통장사본 등 확인서류
- ㉤ 공동도급의 경우로서 ㉢ 또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교육지원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 서류

⇒ ㉠,㉡,㉢,㉣,㉤을 1set로 제출

- ㉠,㉡,㉢을 같음하여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을 수료한 경우 발급 가능)
- 법정윤리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만 제출

4. 세부평가기준

(10)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평가항목	⑥ 점 수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체당 각 2점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체당 각 2점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통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당 각 1점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협력업체당 각 1점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협력업체당 각 1점

4. 세부평가기준

(10)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 협력업체가 자사로부터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확인서」 상의 기술개발지원 항목으로 1백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당년도에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를 등록한 경우로서 자사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해 인정)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당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단, 해당 특허와 하도급계약건이 관련공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가능
-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자인 경우에 한해 인정

4. 세부평가기준

(10)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 자사가 건설 시공 관련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협력업자에게 기술이전을 위해 해당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협력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수행하고,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⑥ 점수 산정방법

- 각 평가항목별 해당되는 협력업체가 다수인 경우, 하나의 항목 내에서 최대 배점(대기업 10점, 중소기업 5점)까지 평가점수를 중복하여 산정 가능

4. 세부평가기준

(10)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

사실확인서류

기술지원 유형	제출서류
기술개발비용 지원	㉠ 협력업체의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해당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 협력업체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 자사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인력파견 입증서류(해당 직원의 인사자료 등) 또는 기술전수 교육 입증서류(교육에 참석한 협력업자 임직원 서명부, 교육현장사진 등)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에서 발급한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사본

4. 세부평가기준

(11) 상생협의회 운영 실적 평가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frac{\text{② 상생협의회 운영 현장수}}{\text{①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또는 상생협의회 운영 현장수 합산	20%이상 또는 20개 이상	2
		10%이상 또는 10개 이상	1
		10%미만이고 10개 미만	0
나. 상생협의회 운영성과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회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또는 ‘감사패’ 등 수상한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2
		자체적으로 ③ 상생협의회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1

▶ ‘가’, ‘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인정

- 단, ‘가’는 최대 2점, ‘나’는 최대 3점까지 점수 부여 가능

4. 세부평가기준

(11) 상생협업체 운영 실적 평가

①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공공공사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20.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 받은 자료에 따름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하도급계약 건이 없는 원도급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

② 상생협업체 운영 현장수

- ①의 신규 공공공사 현장 중 상생협업체를 구성·운영한 현장수를 합산
-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업체 협정서' 및 '월간/주간 운영일지'에 따라 공사기간 중 매월 상생협업체 운영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인정
 - 공동도급 구성사인 경우 상생협업체 구성원으로서 협정서 상 기명 날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③ 상생협업체 운영성과

- 상생협업체 운영성과를 입증서류에 따라 상생협업체 운영성과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원도급업자가 자체평가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추진실적 평가표'를 토대로 평가 하되,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상의 '평점'이 아닌 사실확인서류에 근거하여 별도 평가

사실확인서류

(1) 상생협업체 운영 활성화

- ㉠ 현장별 ‘건설산업 상생협업체 협정서’ 사본(붙임 참조)
 - 발주자(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원·하수급인(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모두 날인한 협정서
- ㉡ 참석자 서명날인이 포함된 현장별 ‘월간/주간 상생협업체 운영일지’ 사본(붙임 참조) 및 관련 사진

(2) 상생협업체 운영성과

- ㉠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붙임 참조)
 - 발주자의 실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서류
- ㉡ 상생협업체 운영성과 사실확인서류
 - 발주자가 수여한 표창장, 감사패 등(현장소장 수상도 인정) 또는 운영일지 및 관련 사진 등 상생협업체 운영성과를 입증하는 서류

4. 세부평가기준

(1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 실적 평가

평 가 항 목	점수
①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3
② 시·도지사 표창	2

①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 당년도에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하거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소속 임직원 수상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외 기타 공공기관장, 단체장 표창 등은 불인정

② 시·도지사 표창

- 당년도에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제외)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소속 임직원 수상 불인정)

사실확인서류

- 표창장 등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4. 세부평가기준

(13) 제재처분 감점

① 제재처분 원인행위	평가기준	②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관련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산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38조 관련 - 하도급법 관련 	과태료 1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제23조~제23의3 관련 	벌금 또는 고발 1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관련 	과징금 1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관련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① 제재처분 원인행위

- 당년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법위반 행위로 한정
-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

② 점 수

- 처분유형별 감점을 모두 누계하여 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은 20점에서 차감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를 받은 경우,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공정거래법 제23조~제23조의3)은 1회당 2점, 그 외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공사 하도급 관련은 1점 감점
- 건산법 상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하도급 계약 후 30일 이후 통보) 또는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 1점만 감점

사실확인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4. 세부평가기준

(14) 사망사고 현장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② 점수
①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2인 미만	-5
	2인 이상	-10

①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전년도 사망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단, 2019년은 7월 15일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한하여 평가
- 신청사에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산재 책임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사망자수 제외
- 추후 산업재해 확정되는 경우 차년도 평가에 반영
- 공동도급 현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지분율을 고려하여 사망자수를 안분 계산

② 점수 산정방법

- 제재처분 감점 점수와 합산하여 대기기업은 최대 10점, 중소기업은 최대 20점 내에서 감점

사실확인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4. 세부평가기준

(15)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산정방법	⑤ 평가기준			
	대기업	가점	중소기업	가점
$\frac{\text{② 시스템을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text{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times \text{④ 시스템 활용 개월수 평균}$ ③ 시스템 활용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70%이상	+3.0	60%이상	+3.0
	60%~70%미만	+2.5	50%~60%미만	+2.5
	50%~60%미만	+2.0	40%~50%미만	+2.0
	40%~50%미만	+1.5	30%~40%미만	+1.5
	30%~40%미만	+1.0	20%~30%미만	+1.0
	20%~30%미만	+0.5	10%~20%미만	+0.5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당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한 모든 ‘민간공사’ 중 당년도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현장수를 누계
 - 단, 원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장, 하도급대금 직불 현장은 제외

② 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 민간공사 현장수

- ①의 민간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내 발생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현장수 합산
- 현장 내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모든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부 하도급공사 현장에 대해 동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 소명 필요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4. 세부평가기준

(15)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③ 시스템 활용 개월수 평균

- ②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별 ‘공사개월 수’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공사개월수’는 당년도 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한 자료 기준
 - 단, 계약연월이 당년도 이전인 경우 시스템 활용 시작일을 1.1.로 설정하고, 준공예정연월이 당년도 이후인 경우 시스템 활용 종료일을 12.31.까지로 설정

④ 시스템 활용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 ③의 공사개월수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대상월(기성월) 수를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수의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이 최초로 지급된 현장과 마지막으로 지급된 현장을 시작월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산정

4. 세부평가기준

(15)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예시】 2019년 기성실적이 발생한 민간공사 현장이 3개인 신청사에 대한 평가

공사명	공사기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지급			
	계약년월 ~ 준공예정년월	개월수	활용 여부	임금지급 대상월	(임금지급 대상월별) 최초지급일	개월수
A 현장	18.02 ~ 20.02	12개월	활용	1~12월분	(1월분) 18.02.10 (12월분) 19.01.25	12개월
B 현장	19.06 ~ 20.04	7개월	활용	7~11월분	(7월분) 19.07.25 (11월분) 19.12.05	5개월
C 현장	19.10 ~ 20.08	3개월	미활용	-	-	-

-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3건 (A, B, C 현장)
- ② 시스템 활용 현장수 : 2건 (A, B현장)
- ③ 공사기간 개월수 (임금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 : 9.5개월 = (12개월+7개월) / 2
- ④ 임금지급 개월수 (임금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 : 8.5개월 = (12개월+5개월)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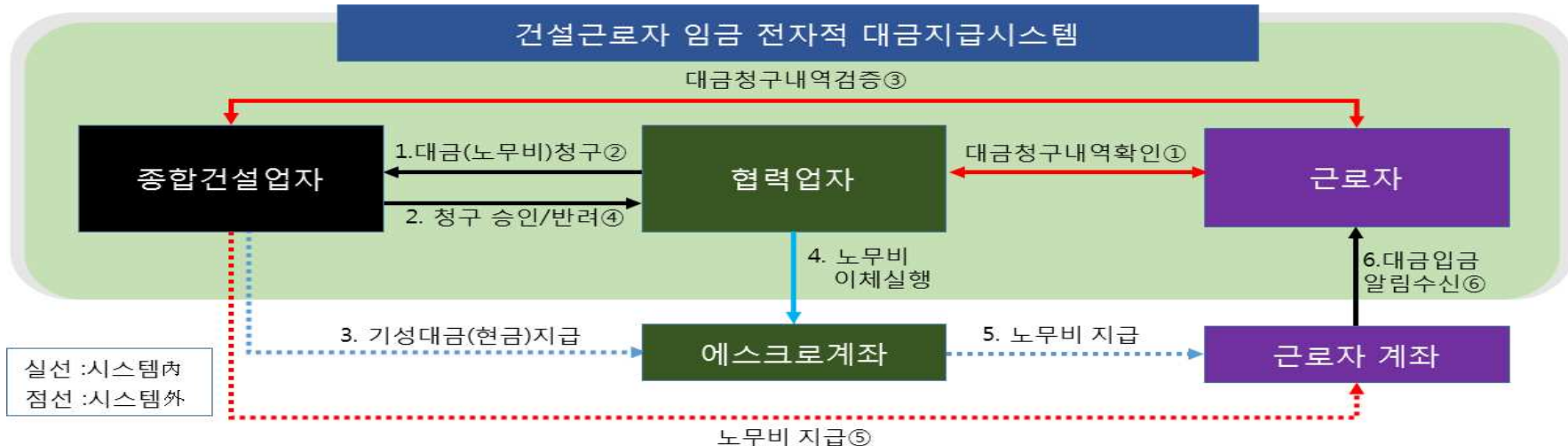
$$\text{❖ 평가산식} : \frac{\text{②}}{\text{①}} \times \frac{\text{④}}{\text{③}} = \frac{2}{3} \times \frac{8.5}{9.5} = 0.596491\dots \Rightarrow \underline{59.6\%}$$

4. 세부평가기준

(15)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요

- ▷ 원수급인이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협력업자의 계좌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협력업자의 인출 제한기능을 갖출 것 (에스크로계좌 등 활용)
 - 다만, 협력업자 동의하에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 에스크로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인정
- ▷ 원수급인가 지급할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협력업자의 대금청구 및 승인기능이 있어야 하며, 원수급인 및 협력업자가 청구·승인 및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것
- ▷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을 갖출 것



사실확인서류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화면캡처 출력물
(종합건설업체명, 현장명, 임금지급 대상월, 월별지급일자 등 포함)
※ 신청사가 동의한 경우 시스템 운영사를 통해 협회가 직접 확인 가능
 - ㉡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 확인서 또는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장근로자수 확인용)
- ⇒ 현장별로 ㉠, ㉡을 1set로 제출

4. 세부평가기준

(16)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점
	대 기 업	중소기업	
① 해외건설공사로서 ②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5건 이상	3건 이상	3
	3~4건	2건	2
	1~2건	1건	1

① 해외건설공사

- 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당년도에 해외에서 기성실적이 발생한 공사

②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 자사가 해외공사 진출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형태로 협력업자와 동반 진출한 건수
- 하나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
-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수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건은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사실확인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4. 세부평가기준

(17)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수 <hr/> 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수	80%이상	5
	65%이상~80%미만	4
	50%이상~65%미만	3
	35%이상~50%미만	2
	20%이상~35%미만	1
	20%미만	0

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수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민간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20.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단, 2019년은 7월 15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분에 한하여 인정

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수

- ①의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시공과정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현장수를 합산
- 당년도 계약 후 차년도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사용된 경우에도 평가시까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현장으로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각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일체형 작업발판 (시스템 비계)

-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사실확인서류

-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에 대한 감리자(또는 발주자) 확인서
- ㉡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 현장별로 ㉠,㉡,을 1set로 제출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전체메뉴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2019년도 업종별 협력업체 관리대장

상호협력 신청사 및 작성담당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홈텍스 자료의 협회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체 정보 갱신 조회 저장 삭제

업체개요

상호	주식회사 대한건설	대표자	김건설	기업규모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616-88-12314	법인등록번호	222222-2222222	전화번호	02-3485-8200 +예) 02-000-0000
본사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3길 21 - 0				
건설업등록번호	토건 111111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222222

작성담당자

소속부서명	업무부	직위 및 성명	대리 홍길동 +예) 대리 홍길동	전화번호	02 - 1111 - 1112
휴대폰 번호	010 - 2222 - 3333	이메일	skddd@naver.com		

홈텍스 온라인전송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송하세요

- * 부가세신고(매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왼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 * 이용절차 안내 (프로그램 관련 문의: 02-2122-2536 나이스D&B)
- * 자료전송클릭 → 동의 → 공인인증서 인증 → 자료전송 → 전송내역 조회

개인보호정책 ▶ 약관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해당 시스템의 활용목적에 의하여 사용되며, 해당 서비스관련 상담, 불만처리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 버튼 클릭시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자료를 협회로 온라인 전송 가능

- 온라인 전송시 하도급 기성실적 평가 사실확인서류 중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필요

※ 신청사의 자료 제공 동의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직접 자료 전송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상호협력평가의 대상이 되는 당년도 협력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란색 음영 업체는 신청서류 제출시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업종: 상호:

법인별협력업자수 : 189 총협력업자수 : 189

순번	업종명	협력업자등록일	전년협력업자
<input type="checkbox"/>	1 가스시공 (유)건설개발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2 가스시공 (유)가람엔지니어링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3 강구조물 (주)벤티코리아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4 강구조물 케이슬(주)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5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6 강구조물 (주)세원이엔지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7 강구조물 세진기업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8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9 건축 (유)관포건설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10 금속창호 (주)발트에이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11 금속창호 주식회사사이미블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12 금속창호 한빛유리(주)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13 금속창호 (주)테크원창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14 금속창호 효원산업(주)	2019-01-01	Y
<input type="checkbox"/>	15 금속창호 화성엠텍(주)	2019-01-01	Y

- 검색되지 않는 협력업자(목록에 노란색 음영 표시)라면 직접 입력 후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제출시 해당 협력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 협력업자는 업체가 아닌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 있는 업종 단위로 등록
- 협력업자는 연도별로 등록·관리되므로 전년도 협력업자이더라도 금년도 등록일자를 입력
- 동일 법인이라도 직전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업종과 다를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로 인정 불가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3)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공통도급 공사에 함께 참여한 협력업자와 자사 및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은 입력합니다.

공통도급한 건수 : 3건 | 업종: [선택]

자사의 원도급신고내역별 기성실적 자료편집

공통도급구성사

자사의 기성액 합계 : 400백만원

번호	당년도 기성액	예외
4어릴토건	100	N
4어릴	100	N
4어릴	200	N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 공동도급 구성사가 현재 대기업 이라 하더라도 당초 계약체결시 중소기업이었던 경우로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되었던 경우라면 해당 공동수급자에 “예외”란에 Y로 체크

■ 하나의 원도급에 대해 각각 다른 건으로 실적 신고한 경우 별건이 아닌 1건으로 인정되기 위해 “중복여부” Y로 체크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협력업자에 대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을 입력합니다
(노란색 음영)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자료편집

원도급공사

1 신고번호

2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자사분)

3 계약유형 (자사지분율)

공공공사여부

발주자명

비고

하도급공사

4 업종

5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준공일자

6 총계약액

7 당년도총기성액 (자사분)

당년도기성액 (자사분)

8 홈텍스매입처별 합계금액

하도급추가

하도급추가 수정 삭제 출력

당년도기성실적 합계 : 1,183백만원

하도급공사(백만원)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액	기성액 (자사분)
2017-11-01	2019-08-06	33	0
2019-11-11	2019-11-29	200	0
2019-05-06	2019-09-17	500	500
2019-01-03	2019-01-22	300	50
2019-11-06	2019-11-20	40	0
2019-11-06	2019-11-30	100	100
2019-11-01	2019-11-25	3,333	56

※ 당년도 원도급 기성액이 0 이거나 불인정 받은 경우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저장 닫기

- 계약유형(단독,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를 선택하고, ‘공동이행’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자사의 지분율을 추가 입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하도급 기성액을 입력하면 자사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기성액이 자동 계산되어 “당년도 기성액(자사분)”에 입력됨
- 2건 이상의 원도급 차수계약이 발생하고 하도급계약은 총괄 계약시 하도급 기성액을 한쪽 차수로 합쳐서 입력 가능
-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시 “홈텍스 매입처별 합계금액”이 표시됨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전체메뉴 < 4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별 출력’을 클릭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내용과 대조·확인)

조회 출력 **사업자번호별 출력**

하도급 건수 : 8건 | 하도급기성실적 합계 : 1,183백만원

20 업종: 공사명:

순번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하도급실적	
						하도급건수	하도급기성액(백만원)
1	강구조물	(주)건원건설	212-81-36401	송파-02-21-03	Y	2	533
2	건축	(유)동명종합건설	407-81-09712	140516	Y	3	550
3	금속상호	(주)빌트메이	101-81-17652	83-11-265	Y	1	0
4	기계설비	아이더블유아이(주)	113-81-43565	구로97-12-11	Y	1	100

전체 8건 (1 ~ 8)

-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입력한 자료를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도급 실적을 자동 집계하여 출력됨
-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 자료 상의 순번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해당 목록 우측에 반드시 기재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과 다를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에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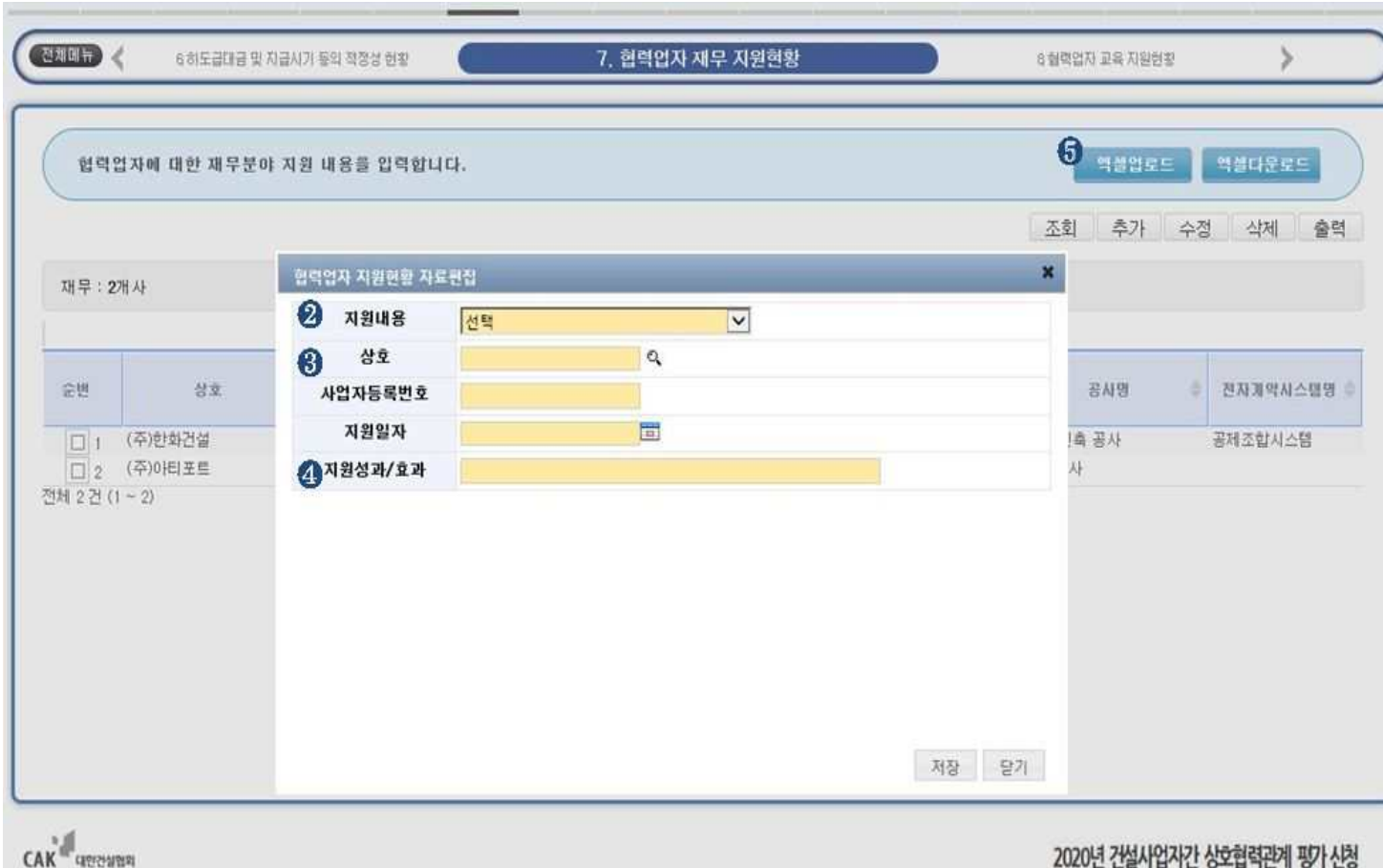
The screenshot displays a web-based form for managing subcontract payment adequacy. It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원도급공사 (Original Subcontractor):** Includes fields for contract number (2018-0020), company name (기술인회관), contract amount (2,000), and contract year (2018-11).
- 하도급공사 (Subcontractor):** Includes industry (건축), contract start date (2019-09-17), and contract amount (500).
-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Subcontract Payment and Timing Adequacy):**
 - Subcontract Rate Calculation: $\text{하도급률} = \frac{\text{하도급계약액}}{\text{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 \frac{500}{550} = 91\%$
 - Checkboxes for '하도급대금 적정여부' (checked), '하도급대금적불', '현금성결제비율 우수여부' (checked),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여부', and '전자하도급 계약여부'.
 - Fields for '하도급대금 지급유형' (Selected: 선급금 제외 하도급대금지불) and '하도급대금 결제수단' (Selected: --선택--).
 - Calculation for '현금성결제비율(A/B)':
 - 하도급(A) = 현금지급액(선급금) / 하도급계약액 = $\frac{500}{2,000} = 25\%$
 - 원도급(B) = 현금수령액(선급금) / 원도급계약액 = $\frac{500}{2,000} = 25\%$

-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금액’을 입력하면 하도급률이 자동 계산됨
 - 모든 공공·민간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해 입력해야 함
- 선급금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체크
 - 이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 여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여부가 자동 체크됨
- 하도급대금 지급 유형 선택
 - 선급금 제외 하도급대금지불
 - 100% 현금성결제수단 지급
 - 어음, 현금성 혼용 지급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7) 협력업자 재무 지원현황



-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재무지원 업체를 목록에 추가하여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을 입력
- 재무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선택
 - 1백만원이상 현금, 현물 지급
 - 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 선지급
 - 전자하도급계약 인지세 70%이상 지원
 - 계약이행보증 면제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8) 협력업자 교육 지원현황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교육지원 업체를 목록에 추가하여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을 입력

교육지원 : 2개사, 0명

협력업자 지원현황 자료편집

2 지원내용 [선택]

3 상호 [검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지원일자(수로일자) [입력]

교육과정명 [입력]

교육기관명 [입력]

참석자 성명 [입력]

주민번호(앞6자리) [입력]

관명 | 참석자성명 | 주민번호(6자리)

수정 | 홍길동 | 890729

관명 | 김하나 | 890729

저장 | 닫기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교육지원 업체를 목록에 추가하여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을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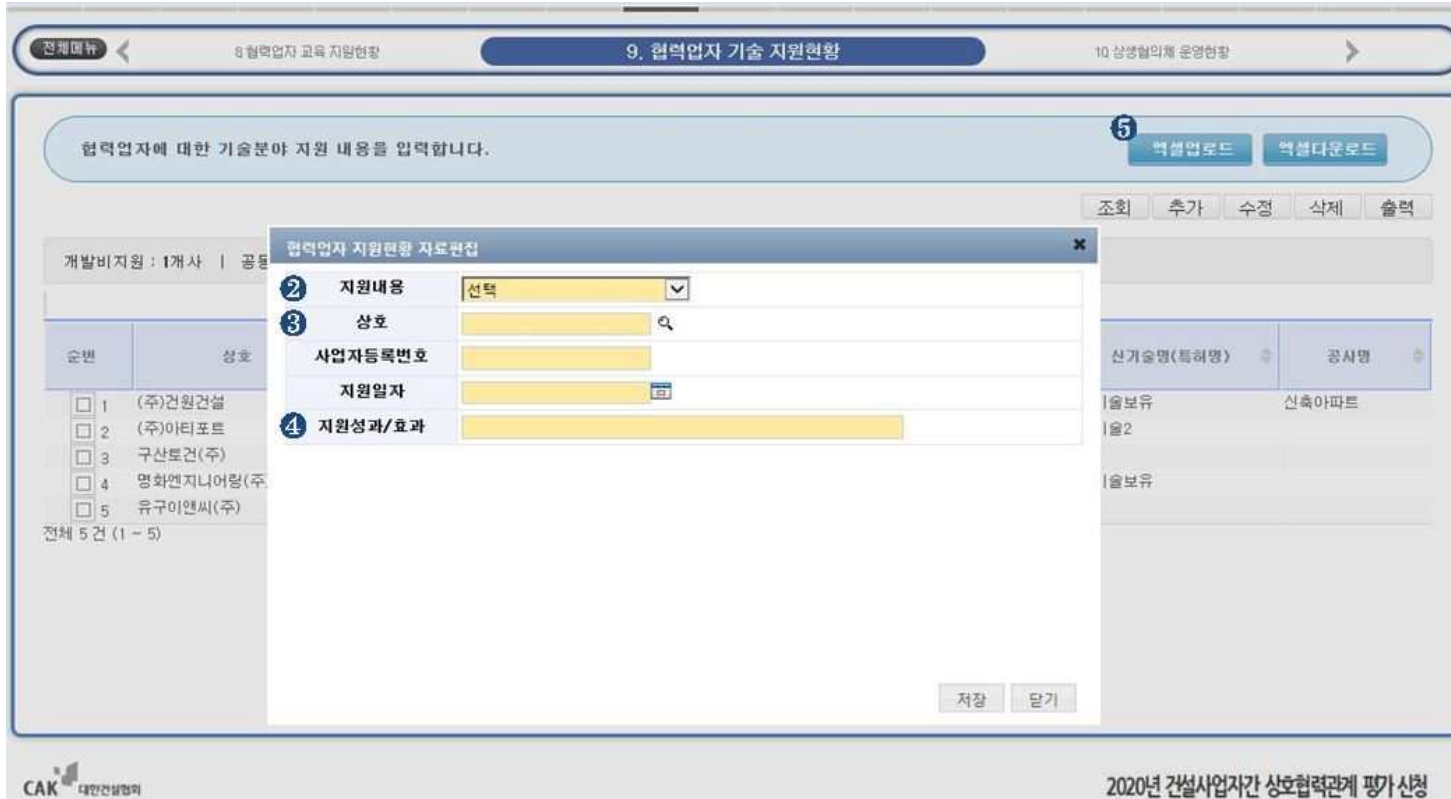
■ 교육유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선택

- 위탁교육-법인수
- 위탁교육-인원수
- 법정윤리교육-법인수
- 법정윤리교육-인원수

■ 교육기관, 교육과정, 참석자 성명 및 생년월일 입력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9) 협력업자 기술 지원현황



■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협력업자 중 기술지원 업체를 목록에 추가하여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을 입력

■ 기술지원 유형에 따라 선택

- 개발비 지원
- 공동개발
- 신기술보유업체 하도급
- 선진기술 이전(신설)
- 성과공유제 수행(신설)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0) 상생협업체 운영 현황

상생협업체 운영현황 편집

• 상생협업체 운영현황

원도급공사

신고번호	2019-0005	공사명	삼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일자	2019-01	발주처명	구청

• 협업체 운영실적

② 성과구분: 운영성과 우수(포상) 협업체 구성일: 20191101

③ 내용: 품질 및 안전환경관리

성과/효과: 위험요소 제거 및 환경개선

• 하도급 리스트 (선택된 업체만 상생협업체 운영, 실적으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업종	사업자번호	상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계설비	1138143565	아이더블유아이(주)

■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한 내용 중 신규 공공공사인 원도급공사 목록이 자동 표시

- 공사건별로 상생협업체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사항을 입력

■ 성과구분에 다음 중 선택 입력

- 운영성과 우수(포상)

- 운영성과 우수(포상 없음)

- 운영성과 없음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1)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 당년도 상호협력 관련 표창 수상 내역을 추가하고 수여기관, 수여일자 등을 입력
- 수여내용에 표창장 상의 상호협력 관련 문구를 간략히 기재 (“원·하도급업체간 상생 및 협력증진”, “공정한 하도급 문화 형성 기여” 등)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2) 제재처분 받은 현황



- 제재처분 종류 및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선택
 - 시정명령, 지시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위반)
 - 시정명령, 지시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 시정권고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위반)
 - 시정권고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 과태료
 - 과태료(하도급계약 지연통보, 변경미통보)
 - 고발, 벌금
 - 과징금
 - 입찰참가제한
 - 영업정지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3) 사망사고 현장 평가

전체메뉴 < 12 제재처분 받은현황 13. 사망사고 현장현황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

건설현장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입력합니다. 역상업로드 역상다운로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총 사망자수 : 3.5명

전체선택

순번	공사명	비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건설타워 신축공사	
<input type="checkbox"/>	2 삼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input type="checkbox"/>	3 빌딩공사	

전체 3건 (1 ~ 3)

사망사고 발생 현황

2 공사명

발주자명

사망사고발생일자

3 사망자수

비고

저장 닫기

CAK 대한건설협회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 2019년 산업재해가 확정된 사망사고 현장을 추가하여 사고내역을 입력
- 사망자수 입력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인 경우 지분율을 고려하여 사망자수를 안분 계산하여 입력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4)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 지급

민간공사에서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여부 및 활용기간을 입력합니다.
(계약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1개월 초과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만 입력)

민간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현황

원도급공사		시스템 활용내역	
신고번호	<input type="text"/>	활용 시스템명	<input type="text"/>
2 공사명	<input type="text"/>	청구승인지급기능	<input type="text"/>
계약년월	<input type="text"/>	실시간 지급확인기능	<input type="text"/>
준공년월	<input type="text"/>	인출 제한기능	<input type="text"/>
당년도공사기간	<input type="text"/> 개월	시작월	<input type="text"/>
당년도기성액	<input type="text"/> 백만원	종료월	<input type="text"/>
총계약액	<input type="text"/> 백만원	3 활용기간	<input type="text"/> 개월
발주자명	<input type="text"/>		

※ 신고번호는 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저장 닫기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 당년도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민간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현장을 추가하여 시스템명, 활용기간 등을 입력
- 활용기간은 시스템 활용 시작월, 종료월을 입력하면 활용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됨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현황

협력업체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역삼업로드 역삼다운로드

동반진출협력건수 : 0건

공사명: _____

순번 신고번호

Showing 0 to 0 of 0 entries

원도급공사		동반진출업체 공사현황	
1 신고번호	_____ x	1 업종	_____
2 공사명	_____	2 상호	_____
계약년월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준공년월	_____	4 구분	하도급
당년도기성액	_____ 백만원	계약일자	_____
발주자명	_____	준공일자	_____
국가명	_____	총계약액 (동반진출업체)	_____ 백만원
※ 신고번호는 년도-순번(4자리)로 입력하세요.		당년도기성액	_____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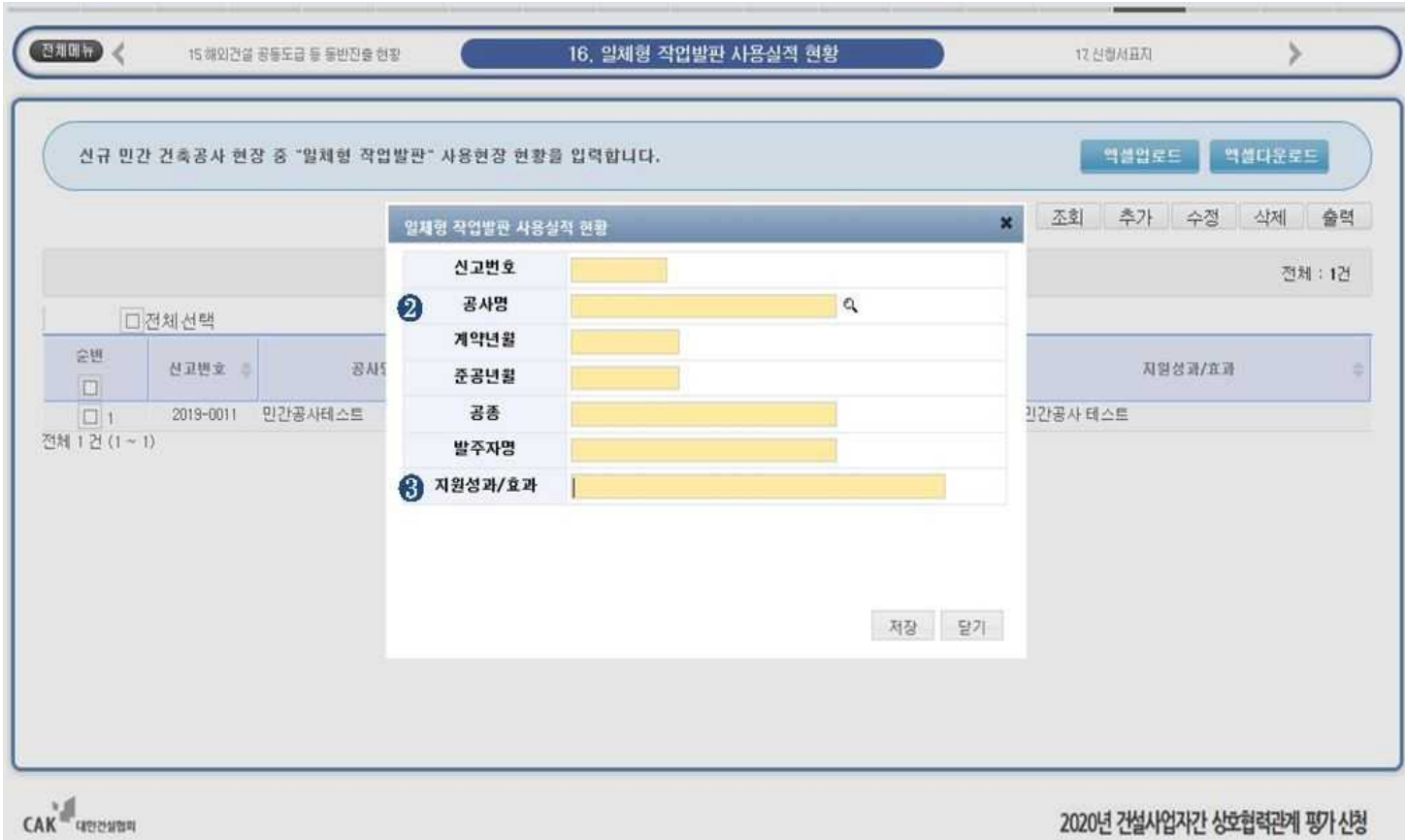
저장 닫기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

-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협력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한 공사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
- 동반진출업체의 참여 유형에 따라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중 선택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6)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신규 민간건축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을 추가하여 지원효과 등을 입력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7) 신청서 표지

전체메뉴 < 16 일제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현황 17. 신청서표지 18 내용 설정(자료전송) >

총기성액 4,118 (당년도 국내기성액 : 3,568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 550) ※201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입력
 ※ 신청 총기성액은 2019년도 공사실적 확정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회 저장 출력

평가분야	상세내용	신청점수
1. 공동도급실적 (10점)	-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5점) - 나.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5 5
2. 하도급실적 (20점)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5
3. 협력업자육성 (57점)	-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 대금 및 지급 시기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일의 적정성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5점) ③ 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④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⑤ 전자하도급계약 (4점) (2)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지도 (10점) ① 협력업자의 재무지원 법인수 (5점) ② 협력업자의 교육지원 법인수 또는 인원수 (5점) -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10점) - 다. 상생협의체 운영(5점)	8 8 0 0 0 0 0 0 0 0 5 4 0
4. 신인도 (13점)	-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상등을 받은 실적(3점) -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받은 실적 (10점) (1) 사정권고·시정명령·지시 0회 (2) 과태료 0회 (3) 고발·벌금 0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1회 - 다. 사고로인한 사망자수(-10점)	0 0
5. 가점 (11점)	- 가. 민간공사 전자적 대금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대금지급(3점) -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등 동반건설실적(3점) - 다. 민간공사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5점)	0.0 0.0 0.0
6. 신청점수 합계	각항목별 신청점수의 합	32.0

■ 총기성액은 '당년도 국내기성액'과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을 합산한 금액

- 당년도 국내기성액 :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는 '19년도 국내기성액(누락신고분 제외)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실적의 합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8) 내용 확정 (자료전송)

2019년도 상호협력 평가 내용 확인 및 확정

1. 업체 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작성완료
2. 2019년도 협력업자 관리매장	190 건
3. 신청 접수	32.0 점

이전으로

(작성내용을 다시 확인 하겠음)

1 신청내역확정

(내용확정 시 자료전송 됨)

■ "신청내역확정" 클릭 시 재입력이나 수정은 되지 않으니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 후 신청내용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확정후" 수정 또는 후기 입력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도회	전북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 5층)
TEL	(063)298-3881 ~ 2
FAX	(063)295-5290

- 신청내용 확정(버튼 클릭)시 자동으로 전송됨
- 상호협력평가 신청기한 이내에 신청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사는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는 본회 정보관리실로 문의

5. 프로그램 입력 요령

(19) 서류출력

제출 시도회	전북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 5층)
TEL	(063)288-3881 ~ 2
FAX	(063)285-5290

■ 출력 후 입력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 협회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온라인 전송자료가 다를 경우, 협회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온라인 자료전송만 실시하고 신청마감일('20.3.16.)까지 상호협력평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 업체로 처리

6. 2021년 평가 변경사항

(1)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시 지역 협력업자 실적으로 평가

- 공동도급에 참여한 협력업자의 기성액 산정시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현장의 시·도인 협력업자의 기성액만 합산

(2)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조기지급 평가 통합 및 평가기준 강화

-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과 조기지급 평가를 통합하고 배점 하향 (8점+5점 ⇒ 8점)
-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으로서 법정기일 도래 전에 협력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계약 건수 합산하여 평가
- 신규 하도급건수 중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가 60% 이상이거나, 전체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가 120건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현재 30%이상, 50건이상 만점)

(3) 전자하도급계약 실적 평가기준 강화

-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하도급계약 비율이 80% 이상 경우 만점 부여 (현재 50% 이상)

(4)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를 가점에서 배점 항목으로 전환

7.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제출 후 수정 불가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는 협회에 3월 16일까지 제출 후 추가 또는 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제출 이전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의 내용과 온라인 전송자료가 다를 경우, 협회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확인 후 제출 요망

(2) 제출기한 이후 제출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기간 내 제출된 건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기한 이후 제출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해당항목 “0”점 처리)

(3) 허위작성 서류 제출시 제재조치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 신청한 자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등 입·낙찰시 우대 중지 (조달청 통보 조치 등)

7. 신청 관련 유의사항

(4) 차년도 평가 대상 성실신고

- 이월되는 공사(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는 다음년도 상호협력평가지 반영되며, 당년도 제출·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평가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성실 신고 요망

(5) 사실확인서류 원본 제출 및 사전 준비

- 각 사실확인서류는 특별히 사본 제출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

(6) 업체별 담당자 정보 변경시 통보

- SMS를 통한 안내는 신청서상에 기재된 각 업체별 담당자 연락처로 통보되니, 담당자 부재 또는 퇴직 등으로 연락처 변경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